

[기윤실 특별포럼]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

- 1차 : 공정, 그 너머 우리시대의 담론 -

2021년 9월 30일(목) 오후 3시

유튜브 중계 "기윤실" 

발제 1 \_ 이준일 교수 (고려대 법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발제 2 \_ 김동춘 교수 (성공회대 사회학,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논찬 \_ 김경미 대표 (새도우캐비닛)

\_ 김선기 연구원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대담 \_ 사회 이상민 변호사 (기윤실 좋은사회운동 본부장)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공정이란 무엇인가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법학박사)

## 1. 시작하면서

‘공정’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사실 공정은 이미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로 확인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 주목받는 것일까? 스스로 불공정과 싸워 왔다고 주장하며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은 검찰 총장 출신의 한 인사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선거구호로 들고 나왔다. 이 인사가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도 ‘기회의 평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다.<sup>1)</sup> 대체로 공정은 절차, 정의는 실체(내용), 평등은 형식과 관련지어 논의되는 것처럼 공정, 정의, 평등은 엄밀하게 구분하면 다른 용어이지만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거나 어떤 면에서는 동의어일 수도 있다. 공평, 공의, 형평, 균등이라는 표현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이 공정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공정을 정의나 평등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로 한다. 당연히 공정의 반대말인 ‘불공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사회적 현상들을 살펴보면 공정의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한국 사회의 불공정 현상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한다.

## 2. 선착순 혹은 추첨제

공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선착순’이다. 일상에서 매우 익숙한 선착순은 공정의 최소한으로 여겨진다. ‘먼저 온 순서대로 원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first come, first served)’이야말로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이나 병원의 창구에서 사용되는 ‘번호표’가 대표적이다. 번호표는 ‘줄서기’의 세련된 형태다. 매표소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식당에서도, 계산대에서도, 접수대에서도 차례(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줄을 선다. 줄서기가 다소 불편하기는 해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1)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인용.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이상이 되면 줄을 잘 서서 이득을 보거나 줄을 잘못 서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한 줄 서기'가 줄서기의 이상형이 되고, 이를 대기번호로 자동화하여 물리적 줄서기의 번거로움을 제거한 것이 번호표다. 번호표는 '예약제도'를 통해 줄서기의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기도 한다. 전화든 메일이든 먼저 예약한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예약제도는 최근에 인터넷예약제를 통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선착순은 일찍 온 행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일찍 온 사람의 '노력'을 평가해준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흔히 '성실'로도 표현되는 노력(수고)의 양(시간)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는 격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공정 관념이 지배하여 '개근상'이 성실의 표상인 것처럼 대우받기도 한다.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일찍 등교할 필요는 없지만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중한 시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자한 것이므로 여기에 일정한 평가가 부여되는 것이다. 하지만 노력과 성실이 항상 '성과'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일찍 오거나 빠지지 않고 온다고 해도 정작 와서 즐기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설령 즐지 않고 집중했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출석도 다 하고 리포트도 다 냈고 시험도 다 봤는데 왜 이런 학점밖에 안 되냐는 불만, 나름 성실하게 노력했는데 제대로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성적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매학기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들이 상당수의 학생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이야기다. 애초에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노력과 성실로 성공할 수 있다는 권고는 단순한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노력이나 성실을 기준으로 먼저 오거나 빠지지 않고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오더라도, 몇 번은 빠지더라도 혹은 와서 즐더라도 기대하는 성과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개근상보다 중요한 것은 결석이나 지각을 많이 해도 '우등상'을 받는 것일 수 있다. 양자택일적 결론을 피하고 절충적 타협점을 찾는 것이 비겁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노력이나 성실과 함께 성과나 결과가 동반되어 평가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줄서기나 번호표로 요약되는 선착순 체제에서 가장 해악이 되는 행동은 '새치기'다. 차를 여기서 중간에 끼어드는 행위인 새치기는 번잡한 도로에서 일렬로 늘어선 차량들 사이로 쩍썩하게 차머리를 들이치는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새치기는 노력의 투자 없이 손쉽게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으로 노력을 기본으로 하는 선착순과 정반대의 지점에 위치한다. 한 동안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새치기가 존재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

한다.) 노력과 성실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어도 노력과 성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선착순이 여전히 공정으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의미를 고려할 때 새치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새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 선착순이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선착순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 선착순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하나의 '규칙'이나 '질서'로 합의되었다면 새치기는 일종의 예외(열외)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예외는 사실상 우대로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정한 사회는 새치기라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다. 권력이나 부와 같은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영향력을 소유했다고 성실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린 사람들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새치기의 특권이 인정되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다. 새치기의 방치는 예외라는 이름으로 '반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반칙은 불공정의 다른 이름이다.

반칙이 불공정이라면 모든 반칙행위는 반드시 단속되어 합당한 제재가 가해져야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단속기관의 인력부족이나 나태함으로 반칙행위에 대한 단속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공정한 사회는 반칙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반칙행위를 하고도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의 숫자를 최대한 혹은 완벽하게 줄이는 사회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또는 불법주차로 과태료의 부과를 받을 때 '왜 나만 단속하냐'는 불만이 튀어나올 수 있다. 일종의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인데 평등은 오로지 합법의 평등일 뿐이다. 다른 사람도 반칙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반칙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반칙행위에 대한 단속은 행정 당국의 몫이지만 행정 당국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칙행위는 여전히 반칙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칙을 정해 놓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철저한 단속을 통해 규칙의 강제력을 담보해야만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며 반칙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것은 공정한 사회에서 멀어졌다는 명백한 증거다.

선착순은 정원제한이나 인원제한과 같은 '숫자제한'과 결합되어 무한경쟁을 유도한다. 한국 사회에서 학교나 군대를 떠올리면서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는 '얼차려'를 쉽게 기억해 낼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가혹한 것 중 하나가 선착순일 것이다. 특정한 지점이 지목되면 모두가 동시에 그쪽을 향해 뛰기 시작하여 일정한 숫자 안에 원점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얼차려라는 이름의 기합을 면제받고, 순위 밖으로 밀려난 사람은 다시금 동일한 기합을 반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료들을 제쳐야만 하고, 아무리 죽을힘을 다해 뛰더라도 순위 안에 들지 못하면 가혹한 벌을 반복해야만 한

2) 최근 한 정치인(국회의원)이 백신 접종 순서를 어기고 먼저 백신 주사를 맞아 새치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를 떠올려 보자.

다. 별이 아닌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숫자제한과 결합된 선착순은 대부분의 '시험'에 도입되어 있다. 합격자의 숫자가 제한된 시험에서는 아무리 시험을 잘 보고 점수가 잘 나와도 순위 안에 들지 못하면 탈락(불합격)의 쓴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의 형태로 진행되는 시험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시험이나 사원채용시험처럼 반드시 일정한 숫자만 합격시켜야 되는 시험의 경우에 선착순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합격시켜야 하는 시험의 경우에 선착순은 가혹하고 심지어 불공정하기까지 하다.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단지 일정한 숫자에 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시험에 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사회는 불가피하게 숫자를 제한해야 해서 선착순을 기본으로 하는 시험과, 능력이나 자격만 충족되면 숫자와 상관없이 합격시키는 시험을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경쟁을 만들지 않는 사회다.

예외 없는 선착순은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술적인 공정성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 또는 선착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기도 한다. 소방차나 응급차에게 도로를 양보하는 것, 임신부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 사회를 포함하여 어느 사회든 '사회적 약자'가 존재한다.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 사이에 엄존하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선착순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장애인이나 여성, 아동이나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예외 없이 선착순을 요구하면 그들은 그저 맨 뒤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다 꼭 필요한 제 때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거나 공급의 부족으로 그들의 몫을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그들에게 선착순의 예외를 인정하여 조금은 앞쪽에 세워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특권의 의미를 가지는 예외, 반칙으로서 불공정에 해당하는 예외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각종 편법 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에게 허용되는 예외를 이용하여 특권과 반칙에 해당하는 예외를 정당화하는 일도 불공정에 해당할 것이다.

선착순을 대체하는 제도로 고안된 것이 '추첨제'다. 일단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한 통에 집어넣고 일정한 방식으로 당첨자를 골라내는 추첨을 실시하는 것이다. 사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입학 혹은 아파트나 오피스의 분양을 위한 추첨을 생각해 보자. 추첨은 오로지 '우연'에만 결정을 맡긴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우연은 때로 '신(절대자)의 뜻'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식이라면 복권(로또)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제도가 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가진 많은 지원자가 물리는 경우에 추첨은 외부적 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점에서 나름 공정해 보일 수도 있다. 심지어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원하는 사람을 모두 지원하게 하여 추첨으로 선출하고, 이러한

추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모든 결정을 우연에 맡기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일 수 없다. 물론 아파트의 분양이나 휴양림 숙박시설의 이용처럼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추첨제가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결정을 추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 현실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사람, 얻기 위해 간절함으로 노력한 사람, 충분히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과 같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배제함으로써 매우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추첨으로 결정하여 우연에 맡기자는 것은 공정한 사회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비관주의'에 근거하거나 단지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하는 '철학적 게으름'일 수 있다. 심지어 추첨제는 모든 결정을 우연에 기반을 둔 요행(행운)에 맡김으로써 오늘도 일확천금을 꿈꾸며 로토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처럼 오로지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사람들, 노력 없이 한탕(대박)을 벌이기 원하는 사람들만으로 가득 찬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 3. 다수결 혹은 만장일치

공정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는 '다수결'이다. 다수의 결정이 소수의 결정보다 옳다거나 선하다는 것도 널리 퍼져 있는 생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러한 다수결원리는 보편적 정치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절대다수제 또는 상대다수제로 다수결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인 선거제도는 다수의 지지를 획득한 사람을 대표로 결정하는 다수결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의사결정에서도 정족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수결은 공정한 제도로 인식되어 수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다수의 결정이 옳거나 선한 것은 아니었다. 다수결은 오로지 다수라는 숫자적 결과에만 주목하고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무시될 수 있으므로 다수의 결정도 비이성적 결정으로 틀릴 수 있고 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수의 의사보다 소수의 의사를 우선시키면 자칫 소수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수의 이해관계가 결정됨으로써 다수가 피해를 보는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쩌면 다수결은 모두는 아니지만 적어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다수결은 전체의 의사로 간주되는 다수의 의사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한국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자가 제한되거나 선동이나 조종이 개입하여 다수의 의사가 형성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다수결은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수도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면 모르겠지만 소수의 의견이 최종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다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간주한 뒤 그것을 소수에게 강요하는 경우에는 치명적 약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social minorities)'의 문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수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는 소수자가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다수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사실 다수와 소수의 관계는 가변적이다. 특히 정치에서는 언제든지 다수(여당)가 소수(야당)가 될 수 있고,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다수가 될 수 없는 '절대적 소수자'도 존재한다. 이러한 절대적 소수자에게 다수결의 강요는 죽음만큼 가혹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특별한 예외로서 대안(대체수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결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는 '만장일치'다. 모두가 동의하는 결정만 전체의 결정으로 삼는 것이다. 교황선출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만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만장일치는 매우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끌어내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어떤 면에서 만장일치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려야 하는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기 위한 심리적 타협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만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합의하는 만장일치의 결정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모두가 동의하여 아무런 이의도 없이 합의할 수 있는 결정만이 공정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공정이라는 이름의 비현실을 강요하고 결과적으로 실현가능한 공정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일 수 있다. 결국 만장일치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수결은 공정을 위한 '차선'이다. 다만 다수결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해야만 공정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수의 결정은 마땅히 전체의 결정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단지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 다수의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전체의 의사로 간주되는 다수의 의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에 의해 거리낌 없이 거부될 수 있는 사회도 공정하지 못하다.

#### 4. 기회의 평등 혹은 결과의 평등

공정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으로 이해된다. 애초에 기회부터 박탈하는 '차별'은 공정의 부정이다. 차별의 이유는 인종, 피부

색, 국적, 성별, 장애, 연령, 학력 등 다양하다.<sup>3)</sup> 차별의 영역도 고용(직장), 교육(학교), 거래 등 삶의 영역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차별은 늘 비교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비교대상 또는 비교집단이 차이가 없이 동일한데도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거나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에게 유리한 대우를 하여 결국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이 불리하게 되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다. 같은 맥락에서 비교대상 또는 비교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상이한 대상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차별인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을 비교하면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그러한 차이 유무에 걸맞게 동등한(동일한) 대우나 차등적(상이한) 대우를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흔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비교가 되는 개인들이나 집단들 상호간에 차이가 없는데도(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가치가 동일한데도) 차등적 대우를 하거나(예: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sup>4)</sup>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서처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도(예: 남성과 비교하여 임신·출산이라는 여성의 특성상 차이가 있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라는 장애인의 특성상 차이가 있는데도) 동등한 대우를 하려면(예: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대우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동일하게 대우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출발 조건이 다르고, 진행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이 반드시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똑같이(공평하게) 처우하는 '절대적 평등'이 공정일 수는 없다. 절대적 평등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고, 실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사람을 균일화(획일화)하는 전체주의적 이념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결과의 평등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과정에서의 특별한 고려와 결과에서의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이나 사회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쿼터제(할당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 또는 잠정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로 부르는데<sup>5)</sup> 이것을 이른바 '역차별'이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인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3)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차별금지사유로 열거된 것은 다음의 19가지다(동법 제2조 제3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4) '근로기준법'은 균등한 처우의 원칙을 규정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6조).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적극적 조치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 미등록 이주민(외국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공동체다.

기회의 평등이 곧바로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출발조건의 차이' 때문이다. 일정한 높이의 울타리 너머를 볼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도 출발조건인 키 높이나 받침대 소유 여부에 따라 울타리 너머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사람도,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도, 심지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해야 할 게임의 운동장에 존재하는 기울어짐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겠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경제적 약자)은 아무리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받고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해도 출발조건의 차이 때문에 결과의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로도 표현되는 이른바 '사회권(사회적 기본권)'의 보장과 이를 구체화하는 국가의 '사회보장(복지)제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sup>6)</sup> 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이를 구체화하는 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운동장의 기울기가 상당 부분 조정된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흔히 '금수저' 또는 '흙수저'로 표현되는 부(富)의 대물림 혹은 빈곤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것도 단순히 경제적 약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기회의 평등을 지나 결과의 평등에까지 이르는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5. 엘리트 혹은 집단지성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엘리트와 평범한 능력을 가진 다수의 집단 가운데 누가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엘리트에 속하는 검사나 기자에게서 종종 볼 수 있듯이<sup>7)</sup> 엘리트는 능력에서 특별하지만 종종 '로비'로 미화되는 부패에 오염될 가능성, 자신이 속한 이익 집단에 유리하게 편파적인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지성은 다수의 지혜를 모아 엘리트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전문적 영역에서의 결정능력이 부족하고, 마찬가지로 이기적이며 선동에 휘둘

6)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일반적 사회권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외에도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주거에 관한 권리(헌법 제35조 제3항), 의료에 관한 권리(헌법 제36조 제3항) 등이 사회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7) 수십 척의 선박과 슈퍼카를 소유했다고 자랑한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다수의 검사들과 기자들에 관한 언론보도가 최근에도 등장했다.

리는 포퓰리즘에 노출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태어날 때부터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엘리트와 집단지성은 상호배제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공존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아무리 법이나 의료의 영역에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경제나 과학기술과 같은 영역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영역에서 엘리트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특정한 영역에서는 평범한 다수의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선천적인 행운이나 축복으로 타고난, 혹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갈고닦아 획득한 '능력'이나 '자격'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러한 능력이나 자격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는 평등도 '상대적 평등'으로 차이가 없는 동일한 대상은 동등하게 대우하고, 차이가 있는 상이한 대상은 차등적으로 대우하도록 요구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한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우월한 성과와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능력주의'는 일정 정도 피할 수 없다.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특정한 전문적 분야에서는 엘리트의 의견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의 일탈은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기소독점주의('검사만 기소할 수 있다')와 기소편의주의('기소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다')를 무기로 검사가 편파수사 혹은 표적수사를 해서 피의자의 유죄를 덮고 불기소하거나 피의자의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 기소할 수 있고, 언론의 자유의 보루인 기자가 치우친 진영논리에 빠져 객관적 사실보도를 내팽긴 채 특정 진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보도를 일삼거나 심지어 허위사실로 가득 찬 가짜뉴스까지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다. 엘리트가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채 부패에 오염되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편파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으므로 엘리트에 대한 집단지성의 지속적인 비판과 견제가 허용되어야만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능력과 자격을 가진 엘리트가 자신의 전문적 영역에서 결정을 내리게 하되 평범한 능력과 자격을 가진 집단지성이 이러한 결정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늘 비판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엘리트와 집단지성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6. 경쟁 혹은 배려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두고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시장경제질서는 '경쟁'을 기본원리로 삼는다. 경쟁은 열의와 창의성을 자극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 풍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모두가 잘 사는 발전된 사회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경쟁은 불가피한 측

면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쟁은 공정한 사회의 필수적 조건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자유로운 경쟁에 제3자가 개입하여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법칙이 지배하게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되거나 독점이나 과점으로 경쟁의 룰이 깨뜨려져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간섭하는 것으로 충분하다.<sup>8)</sup>

경쟁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공정한 경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규칙은 오로지 '실력'에 따라서만 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거나 선천적 능력과 후천적 노력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실력 외의 요소들이 개입되는 순간 그 경쟁은 불공정한 것으로 변한다. 입시비리나 채용비리 또는 인사비리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참가자의 실력 외에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 또는 인맥이 작동하는 순간 불공정한 경쟁이 시작된다. 공정한 경쟁은 그나마 사회적 신분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다리인데 불공정한 경쟁은 그러한 사다리를 망가뜨리거나 걷어차는 것과 같다. 불가피하게 경쟁을 인정하는 한 그 경쟁은 규칙과 실력에 따라 진행되는 공정한 경쟁이어야 한다.

치열한 경쟁의 과정에서는 오로지 능력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에 대한 '배려'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도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국가가 언제나 중립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국가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 기준으로 인식되는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공무원(공직자)'이라는 사람이고 그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완전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무원은 로비라는 이름의 이권개입에 취약하고, 심지어 한국 사회에서 여러 검찰, 경찰, 세무 공무원의 비리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뇌물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금품과 향응, 성접대를 거리낌 없이 누리는 '부패'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연고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지연(고향), 학연(학교), 사회적 인연(직장, 군대 등)에 따라 공무원의 결정이 왜곡되기 일쑤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결국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권력(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연고주의의 거미줄을 끊어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8) 현행 헌법은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헌법 제119조 제1항) 예외적으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헌법 제119조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표방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② 적정한 소득의 분배, ③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④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가 열거되어 있다.

## 7. 일관성 있는 규칙의 적용이 공정이다

특정한 사회에는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을 지도하는 다양한 규칙(원칙/규범)들이 존재한다. 공정은 이러한 규칙들의 집행과 적용을 지배하는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규칙의 공정한 집행과 적용은 기본적으로 미리 합의를 통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예외의 불인정'이다. 규칙에 예정되지 않은 예외를 수시로 인정하는 것은 새치기와 반칙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불공정의 전형이다. 결국 '반칙 없는 사회', 그리고 반칙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더욱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규칙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일관성'도 공정의 척도가 된다. 약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약한 것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대상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특히 자신이 속한 진영의 논리에 따라 사안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것이다. 특히 법원,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의 편파적인 재판이나 수사, 방송사, 신문사와 같은 언론기관의 편파적인 보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편파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회', 편파적인 시각으로 사람과 세상을 평가하지 않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이다.

굳이 '법치주의'라는 거창한 이름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다양한 규칙들 가운데 법규범은 강제력(관철능력)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가 합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대표(representative)가 결정한 다양한 형태의 법규범이 존재한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범의 내용 자체가 공정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단 공정하다고 추정된 법규범은 애초에 적용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집행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차이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다른 법규범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집단마다 다른 법규범이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 한국사회의 불공정은 원래 적용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법규범이 동일하게 집행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것, 차이가 없는데도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른 법규범이 집행되거나 적용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차별 없이 법이 집행되고 적용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이러한 법의 집행과 적용 과정에서 '부패나 연고주의로 오염되지 않는 결정이 지배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할 것이다. <sup>기실</sup>

## 공정담론, 능력주의와 2030 청년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 1. '공정' 담론과 2030 청년

#### 1) 잘나가는 2030의 공정 담론

- "이런 세상에서 실력이 아닌 경험과 경륜을 말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죠. 경험과 경륜을 들먹이는 많이 들먹이는 정치인은 실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연공서열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인인 경우가 많아요."(이준석)
- "이준석씨가 '정치인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연륜'을 무기로 삼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도발이다. 그의 능력주의에는 한국의 연령 서열 문화를 깨부수는 통쾌함이 있다."(이범)
- '공정' 담론은 성적 혹은 계층 상위 5%의 20,30의 담론. "열심히 공부한 자가 이기는 게임"(이준석) 그것은 지위 폐쇄, 사다리 걷어차기, 지위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의 논리. 인국공, 서울지하철, 고대생의 분교 출신 조롱, 젊은 의사들의 공공의료 반대 등 모두가 같은 논리. 밥그릇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것.
- "공익을 위해 개인 재산권을 제한해도 좋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개인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응답이 20대 34%, 30대 36%, 40대 39%, 50대 46%, 60대 이상 45%로 나타났다. 젊을수록 '공익'보다 '개인 권리'를 우선했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의 51%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엔 40%만 같은 대답을 했다. 오랫동안 진보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공동체주의는 젊은 세대에게선 약화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 청년담론에 청년노동자는 없다. 인서울 4년제 대학생이 청년을 대표. 청년노동자는 없고 청년창업자, 청년기업가만 있다(온갖 청년지원사업).

-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조사에서도 청년들은 "나에게 필요한 건 1초도 망설임 없이 '돈'이다"(SBS, 2019.12.15.)
- 2030 청년을 어떻게 볼까? - 문화세대와 경제 세대  
문화로서는 어느 정도 동질적, 그러나 경제적 처지는 판이하게 차별적  
연령대로서의 특성 (노동시장 진출 이전이나 진출 초기)
- 예고편으로서 '잉여', '루저' 현상, 20대 '개새끼'론  
능력이 제일인 세상에서 '능력없는 인간'의 탄생  
실업자가 아니라 '비소비자'
- 3포, 5포 세대, 소확행, 탕핑족  
과도한 노동과 성공과 생존의 압박  
→ 작은 것에 즐거움과 보람을 찾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최소한의 돈으로 살아가자. 자포자기?
- 일제 메갈, 워마드와 여혐 현상  
박탈감을 비겁한 방식으로 해소?

## 2) 2030 세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산업구조 변화, 평생고용 시대의 종말(15년 평균근속, 49세에 퇴직)  
서비스 산업화, IT 산업 → 고용 불안정  
플랫폼 사회, 플랫폼 노동 → 노사관계의 비가시화, 변화, 개인화  
친족의 해체, 핵가족 = 가족 → 개인주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여권 확대 → 일베  
민주화 운동세력의 집권 → 일베  
고학력화, 고학력 실업 → 잉여  
외환위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시대 → 인적 자본  
인터넷 문화, 넷 우익, SNS 소통
- 청년의 모습은 기성세대(부모)의 모습이 투영된 것(먹고사니즘의 천하통일).  
거시가 아니라 미시로 간 것은 삶의 압박의 결과, 어느 정도 동아시아 일반의 현상(국가주의와 가부장주의 가족주의, 압축성장)

- 한국에서 정치세대(정치적 경험의 공유)는 90년대 중반에 끝났다. 그런 의미에서 50,60은 정치세대이지만 20,30는 정치세대가 아니다. 그러나 50,60 중에서 대학생이었던 사람은 인구 중 30% 이내다. 586는 정치세대이고 기득권의 일부인 것은 맞지만, 그 세대 모두가 기득권자인 것은 아니다. 즉 20,30과 50,60을 대립시키는 <중앙일보> 등의 기획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이고 매우 악의적인 것이다(40-64세 중장년 1인가구의 54%가 월세거주).

## 2. “그건 너의 능력이 아니고 운이야”

- **운칠기삼(運七技三)** : 인생은 운이 70%이고 노력이 30%라는 뜻
- 다시는 한국같은 곳에서 태어나지 마라. (6.25 당시 취재 기자)  
다시는 아프간 같은 곳에서 태어나지 마라. (아프간을 보는 우리)  
작년 올해 Covid 19 와중에 초중고대를 입학생 학생들, 그것은 거의 운이야
- 정트리오(정명훈, 정경화, 정명화)의 성공은 부모를 잘 만난 것, 그리고 20세기 한국에 태어난 것.
- 최고 수입료를 받는 변호사, 최고연봉의 의사, 너희들은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조선시대에는 의사는 중인).
- 연봉 1억을 받는 50,60 대기업 정규직 아저씨의 보상은 젊은 시절 고생한 대가가 아니라 시대를 잘 만난 것.
- 시험 점수 1점 차이로 고소득자가 될 확률이 50%나 증가한 것은 행운으로 봐야
- 운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설사 운칠기삼을 인정해도 그것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 노력의 몫이 아닌 점에서 정의롭지 않고, 같은 조건에서의 실력, 실적 경쟁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늦게 태어났다고 세상의 쓰레기를 다 뒤집어쓰고 살 운명은 아니다. 환경정의, 세대 착취의 문제(지구 환경 위기는 기성 세대가 해 먹은 것을 후 세대가 뒤집어 쓴 것) 해 먹은 사람, 해먹은 나라, 해 먹은 세대는 내놓아야 한다. 후손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

### 3. “그건 너의 능력이 아니고 부모 잘 만난 것(계급)이야”

#### -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 정신은 ‘실력’, 실력주의’다” ( 이준석)

- 시험 잘 봐서 합격한 것은 지능(IQ)과 노력이 합한 것 맞다( 능력주의). 그런데 지능은 너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을 잘 만난 것인데, 그것은 운이다. 노력은 너의 몫이 맞다. 그러나 그것도 너의 것 만은 아니다.
- 지능은 공공재다. 사회에는 천재와 우수한 지능을 가진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비율이 일정하다. 다행이 너가 거기에 속했기 때문이다.
- 지능과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길러지는 것이다. 입양한 두 쌍둥이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
- 노력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그런데 지능이나 재능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것도 환경의 산물이다. 부모의 계층과 학력, 가정생활 등에 따라 아이들의 꿈이 달라진다. 꿈이 달라지면 노력의 의지가 달라진다.
- 시험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따름. 특히 지필고사는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잠재력의 하나의 단면만을 평가하는 과정. 그래서 한 두 번의 시험으로 지위와 보상이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것. 한국은 지독한 시험 능력주의 사회.
- 실력과 시험 합격은 상관성이 크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철저한 성과에 의해 평가받아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간다 ( 물론 가문도 작용한다)
- 너의 실력으로 실력없는 사람보다 안정적 지위와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너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2배, 10배를 더 받아야한다는 법칙은 없다. 특히 CEO의 고연봉,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는 능력의 격차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의 산물
- 너가 받는 높은 보상은 기업의 이윤의 몫이고(사기업), 시장 경쟁의 차단이고(공기업), 기업이 무너지거나 법과 정책이 바뀌면 너도 무너지지만 동시에 기업이 주는 임금 몫의 일부이므로 비정규직, 하급자에게 돌아갈 몫이 너에게 더 많이 온 점이 있다.

\* 세계적 배구스타 김연경의 자발적 연봉 삭감

-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늘 한국의 상위 10%에 속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의 결실을 모두 자신의 소유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생각은 정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다. 타고난 재능은 부모의 덕이지만 동시에 행운이다. 노력은 자신의 몫이라 할 수 있는데, 이상과 목표를 정하는 것, 노력할 수 있는 여건 역시 상당부분은 환경의 산물이다. 신분 사회에서는 노력이 무의미하고, 어릴 적부터 자신의 포부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하층 소년들은 노력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해야할 유인을 찾지 못한다. 교실에서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자신에게는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이미 판단한 뒤 그렇게 했다.

#### 4. Populism 정치와 계급

##### 1) 중도좌파, 혹은 개혁자유주의의 배신

- 미국과 한국의 중도좌파(클린턴, 오바마, 한국의 586)의 시장주의, 능력주의
  - 현실과 괴리. 불평등 심화. 내로남불
- 능력주의의 개인 책임론 : 운이 나쁘거나 업보라고 믿으면 지배는 지속
- 능력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회질서 유지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다. (샌델)
- 사회적 상승의 신화, 사다리 론에 대한 환멸감이 작용한다.
  - 정체성의 정치로(페미니즘과 인종주의)
- 트럼프지지 백인남성노동자들과 한국의 2030 여혐은 유사현상
  - 소수자 우대에 대해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

##### 2) 엘리트주의, 능력주의에 대한 개인주의적 반발

- 청년들이 견지하는 능력주의와 차별주의는 불안의 산물. 고용불안, 지위 불안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태도.
- 능력주의는 교육의 산물. 한국의 전통적인 학력주의, 시험능력주의의 내면화된 상태.

-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문화, 즉 소비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유치원부터 시작한 한국의 경쟁주의가 낳은 자식들. 약육강식, 기업의 이윤 극대화, 능력에 따른 차별화는 자연적 질서로 간주(건드릴 수 없는 필연)
- 신자유주의의 정점은 신중세주의(新新分사회) “세종 친민이 고려대 총학임원?”

### 3) 불평등과 계급

- 목숨을 감수해야만 할 위험 노동을 거부할 수 없는 게 공정인가? 그런 일을 해야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 자본가나 전문직이 아니면, 언제나 해고될 수 있고, 해고되면 자기 자본이 없는 한 생의 안전보장은 없다. 자영업자가 되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 그리고 노인 취업률은 OECD국가에서 가장 높다. 지금 50,60는 70이상까지 일을 해야 한다. 50,60의 90%는 그런 노인의 대열로 들어간다.
- 자본가는 넘사벽이므로 중산층은 모두 자녀를 전문직을 만들기 위해 꿈을 꾀다. 그런데 전문직의 비율은 다 합쳐도 경제활동 인구의 2%를 넘지 않는다.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없다. 그래서 막대한 교육 투자는 사실상 국가적으로는 낭비되는 것이고, 가정 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는다. 하층, 중간층 자녀들의 '잉여'화는 무리한 교육 투자의 결과
- 고액 임금 소득자도 노동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공동결정제, 우리 사주, 경영참가가 없는 한 노동자는 회사 내의 이방인에 불과하다.
- 노동자는 자신의 처지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데 그 돈은 대체로 남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자유다.
- 자본가가 아니라면 부를 세습해서 자녀의 미래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어렵다. 좋은 교육 기회와 부동산 모든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의 상위 2% 정도에 불과
- 노동세계의 위계와 차별을 만드는 것은 노동착취를 위한 자본의 고유한 전략인데, 청년,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이 실업률이 높거나 불안정 노동 영역에서 일하는 게 이들 집단의 인적 속성 때문인 것처럼 만든다.(<http://www.pressian.com>) 2106.6.16. “이준석 현상을 읽는 방법,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 한국의 중대재해 사망률은 세계 2위, 일터에서 매년 2000여명이 사망한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가? 도급, 하청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가?  
(직장이 다르면 같은 노동자가 아닌가?)

### 특성화고 출신 남성 노동자 (천현우)

“무엇보다, 이 암담한 현재를 버틴들 달라질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다수는 직급이 올라도 임금은 거의 안 오릅니다. 이런 형국이니 같은 팀 내에서 월급 10만 원 더 받느니 마느니 가지고 투닥거린 적도 있습니다. 이직하기 위한 기술력도 거의 못 쌓습니다. 끈대들이 으레 말하는 ‘일 배워서 다른 곳 가면 좋은 대우 받는다’는 말은 허상인 셈이지요. 어찌어찌 이 악물고 ‘존버’하려고 한들 회사가 날아가면 도로아미타불이 됩니다.”

“중장년 ‘끈대’들의 폭언폭설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직장 내에서 ‘XX새끼’같은 욕설을 수십 번은 들었습니다. 사회의 시선이요? 최악입니다. ‘X소’라고 왜 부르겠습니까. 당장 저희 어머니도 친구 분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다니는 회사를 하청 내지는 협력업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효성 하청일 땐 ‘효성 다녀’, S&T 하청 다닐 땐 ‘S&T 다녀’라고 합니다.”

“여성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보였던 페미니즘은, 그렇기에 약간의 과격함도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던 페미니즘은, 제겐 아예 남성을 아예 배격시키자는 운동처럼만 느껴집니다.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받아 들여왔고, 이미 몸에 익숙해진 남초 문화라도 틀렸다면 바뀌어야지요. 문제는 이것도 혐오, 저것도 혐오라고 하니 그냥 입 닫고 여자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말란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음 집단간 임금 격차에 대한 의견은?

### 고졸자 - 대졸자간 임금 격차



### 명문대 - 비명문대 출신간 임금 격차



### 여성 - 남성간 임금 격차



## 5. 2030 노동자와 능력주의

- MZ 세대 노조(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IT기업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젊은 직원들의 노조)
- 최근 2030 주도의 새 노조(서울교통공사, LG전자 사무직 노조, 교사노조연맹)
- 광주의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입 직원들의 연공파괴와 능력주의
  - 새로운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평생직장 개념의 소멸, 단기적인 고소득과 은퇴?)
  - 제조업, IT 업종에서 사무직이 기능직 보다 보수가 낮은 경우
  -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갓술' 비판)
  - "정년대신 성과급 달라" (현대차 그룹 사무직 노조)
- 기성노조의 정치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실리주의, 개인주의 성향을 반영
- 연공별 임금체계의 변화 가능성
  - 직무평가 시도해 볼 필요. MZ 노조는 기성 노조를 이해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

## 6. 공정 담론을 넘어서

- 완전한 공정(fair, just)은 논란의 여지가 크고,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 현재의 '공정' 담론은 불평등을 은폐하는 기득권의 면피용 담론의 성격이 강하다.
- 자유주의적인 분배론,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의 탈개인주의론, 사회주의의 필요론 사회민주주의의 사회권론을 재검토할 필요. 한국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승자독식의 정글 자본주의에 가까운 양상
- 균(조소앙의 삼균주의)의 사상과 평등주의 사상에 대한 모색
-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노동교육의 필요
- 상속제 강화, 전문직(법조인, 의료인, 교수 등) 윤리의 타락을 극복해야